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 아파트 공사 부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 훈 계 대 상 자 ① 울산광역시 ○○○○관 지방○○○○사 ○○○  
(전 ○○○○과)  
② 울산광역시 ○○○○관 지방○○○○사 ○○○  
(전 ○○○○과)  
③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보 ○○○  
(전 ○구 ○○○○과)

내 용

지방○○○○사 ○○○은 2001. 7. 10.부터 2011. 8. 10.까지, 지방○○○○사 ○○○은 2012. 7. 10.부터 2015. 7. 10.까지 각각 울산광역시 ○○○○과에서 근무하면서 ○구 ○○동 000번지 일대 ‘○○ ○○○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담당자로서 매장문화재 협의, 보존조치, 시굴·발굴조사 허가신청 및 문화재청에 결과 제출 등 매장문화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보 ○○○는 2015. 1. 12.부터 2017. 3. 2.까지 ○구 ○○○○과에서 동 사업 부지 인근 가설건축물 신청 협의 시 매장문화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울산광역시 ○○○○과에서는 2006. 10. 21.부터 2006. 11. 7.까지 울산 ○○○○○○○센터에서 신청한 ○구 ○○동 000번지 일원에 54,731m<sup>2</sup>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2007. 1. 26.부터 2007. 2. 28.까지 32,420m<sup>2</sup>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2007. 4. 4.부터 2007. 8. 3.까지 14,725m<sup>2</sup>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문화재청에  
2007. 8. 20. 보고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과에서는 2015. 4. 16. ○○○○신탁(주)이 신청한  
○구 ○○동 000번지외 00필지에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지하3층, 지상  
25층, 914세대, 2,622억원, '15.11부터 '18. 4월까지, (주)○○○○)에 대해 건축허가  
를 하였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장문  
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사  
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sup>1)</sup>인 건설공사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  
견된 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  
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

1)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한 사업의 전체 면적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에 수행하여야 하며,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경우 사업시행자가 울산광역시와 문화재 보존 조치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본조사, 시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문화재청 조치에 따라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2007년 동 사업부지 내 도로 0-00호선 반쪽(약 3,703m<sup>2</sup>, [그림 1])<sup>2)</sup>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는 시굴·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유적을 보존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시굴·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당시 지표 조사를 실시한 ‘울산 ○○○○○ ○○○센터’에서 조치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도로 0-00호선(약 3,703m<sup>2</sup>) 도로 반쪽에 대해 시굴·발굴조사의 현

---

2) 조사구간 전체(도로 구간) 폭 중 반쪽은 LH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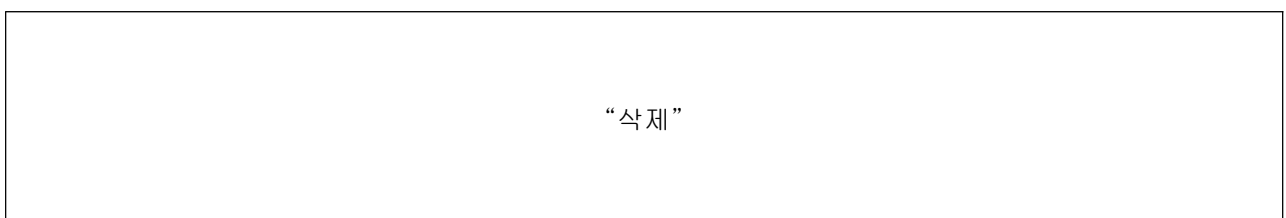
장 확인 등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문화재청에 시굴·발굴조사가 종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위 관서(○○○○과)에서는 ○○○○과 등에 2015. 4. 16. 동 부지 내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누락된 대로 2-31호선 도로 폭의 절반(약3,703㎡)에 대해서는 시굴·발굴조사를 시행한 후 추진하도록 협의해야 함에도

대로 0-00호선 도로의 폭의 절반(약 3,703㎡)에 대해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 하기가 곤란하였고 정확한 수치가 시굴·발굴조사 보고서에 없었으며 토지 미보 상 등으로 일부 구간에 제척된 내용이 시굴·발굴조사 보고서에 없었다는 사유 로 부당하게 협의를 한 결과 ○○○○과에서는 별다른 조건 없이 사업을 승인하 였다.

또한 2007년 동 사업장의 울산 ○○○○○ 문화재 책임조사원인 ○○○은 울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시 “○○ 0-00호선 도로의 폭의 절반(약 3,703㎡)은 아 직까지도 시굴조사를 하지 않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 훼손되었 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관서(○○○○과)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해태 하였 다.

[그림1] ○○ 0-00호선 (○○동 000번지 일원)



|      |  |
|------|--|
| “삭제” |  |
|------|--|

|                  |      |                                                                                                       |
|------------------|------|-------------------------------------------------------------------------------------------------------|
| 지<br>표<br>조<br>사 | “삭제” | 조사시기 : ‘06. 10. 21. ~ ‘06.<br>11. 07.<br>조사면적 : 54,731㎡<br>결과제출 : ‘06. 11. 03.<br>보존대책 : ‘06. 11. 26. |
|------------------|------|-------------------------------------------------------------------------------------------------------|

|                  |      |                                                                                                           |
|------------------|------|-----------------------------------------------------------------------------------------------------------|
| 시<br>굴<br>조<br>사 | “삭제” | 조사시기 : 2007. 01. 26. ~ 2007.<br>02. 28.<br>조사면적 : 32,420㎡<br>결과제출 : 2007. 02. 20.<br>보존대책 : 2007. 03. 07. |
|------------------|------|-----------------------------------------------------------------------------------------------------------|

|                  |      |                                                                                                          |
|------------------|------|----------------------------------------------------------------------------------------------------------|
| 발<br>굴<br>조<br>사 | “삭제” | 조사시기 : 2007. 04. 04. ~ 2007.<br>08. 03.<br>조사면적 : 14,725㎡<br>결과제출 : 2007. 08. 10.<br>보존대책 : ‘07. 08. 20. |
|------------------|------|----------------------------------------------------------------------------------------------------------|

또한 위 관서(○구 ○○○○과)에서는 2015. 12. 14. 동 사업 관련으로 ○구 ○○동 000번지(1,931㎡)내 ‘○○○○○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주)○○○○에 서 현장사무실 등(가설건축물 332.64㎡, 연면적 665.28㎡)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과에 협의하였다.

그리고 ○○○○과에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울산광역시에 문화재 보존조치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본조사, 시굴, 발굴조사를 실시사용’하고 것으로 ○○○○과 협의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구 ○○○○과)에서는 ○구 ○○동 000-0번외 2필지에 대해 동 사업자가 가설건축물 신축 협의 부지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 등을 하지 않고, 협의된 부지 외(92㎡)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가설건축물이 [표 1]과 같이 현장경계로 헨스가 설치되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사유로 현장 조사 등을 소홀히 한 채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중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

[표1] 훼손필지 용지도 및 지적현황

| 용 지 도 | 지 번       |     | 면적(㎡) |
|-------|-----------|-----|-------|
| “삭제”  | 계         |     | 92    |
|       | ○○동 000-0 | (답) | 47    |
|       | ○○동 000-0 | (답) | 43    |
|       | ○○동 000-0 | (답) | 2     |

위와 같이 문화재 유존지역인 동 사업 부지와 가설건축물 사무실부지내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굴·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2018. 3. 15.)까지 공사 중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 ○구청장

[훈계] 위 관련자들 중 지방○○○○사 ○○○, 지방○○○○사 ○○○, 지방○○○○보 ○○○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한 사업시행자 등에게 관련법령 등에 따라 공사중지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